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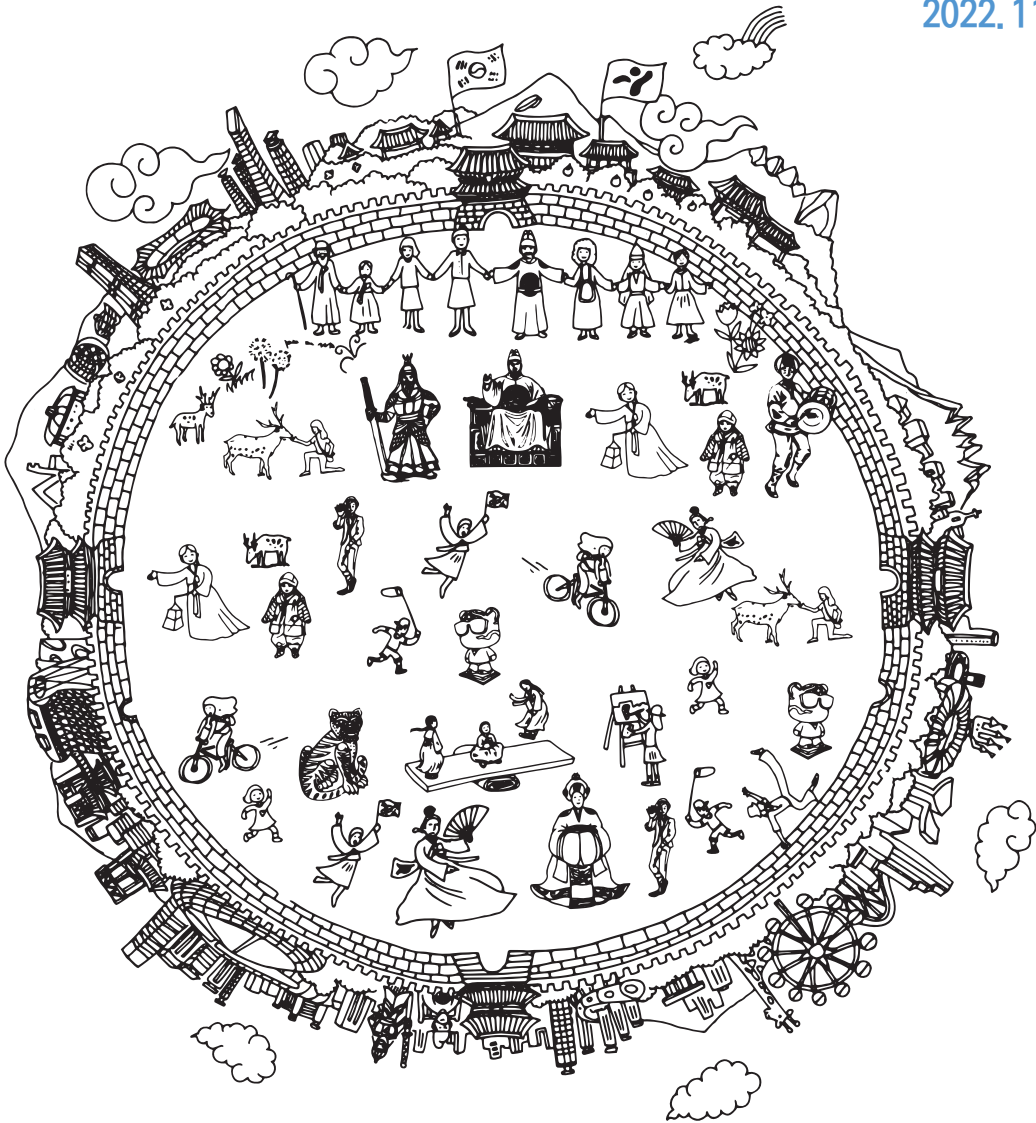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26호
2022. 11. 4.(금)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298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2-298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8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 및 사무범위 확대 조정,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 및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기능과 조직명칭을 변경, 119안전센터 및 119 구조대의 관할구역 및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하고,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사무분장 조정 및 ‘소방학교’의 하부조직 기능조정·명칭변경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 운영중이던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사무분장 조정(안 제10조의 2)
 - 소방학교의 소방교육 기능 일원화를 위한 기능조정 및 조직명칭 변경(안 62조)

- 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를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명칭 변경 및 소방대장 명칭변경, 사무범위를 구조·구급업무까지 확대
- ‘청와대소방대장’ →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명칭 변경(안 63조)
 - 대통령경호처소방대의 제대장 사무분장 중 ‘화재진압 업무’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로 변경(안 64조)

- 다. 방학 119안전센터와 도봉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2)
- 도봉 119안전센터 이전('22.6.15.)에 따른 주소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 라. 종로소방서 119구조대, 금천소방서 119구조대 도로명 주소 변경(안 별표3)

-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 21.10.~' 25.12.), 금천소방서 신설(' 21.1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8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의 직속기관화로 따른 정원 조정,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등을 위해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139명에서 19,167명으로 28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체험관’의 직속기관화로 ‘체험관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1명)

및 본청(소방재난본부)의 정원을 직속기관(시민안전체험관)으로 이관(10명)

－ (직급조정) 소방사 △1 → 소방정 +1

－ (정원이관) 소방령 1, 경 1, 위 2, 장 3, 교 2, 사 1 (※소방사→소방정 직급조정)

나.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행정 6급 +28명)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28명 증원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임기제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9명)

－ 사육운영 6급 △1, 농업또는농지8급 △1, 농업또는농지9급 △7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1,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8

라.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2명)

－ 위생6급 △1, 위생7급 △1 → 조리8급 +1, 위생8급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